

1. 개정이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에 따른 신고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기계설비법」이 개정(법률 제17287호, 2020. 5. 19. 공포, 2020.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 및 경력신고 절차, 성능점검업 지위승계 신고 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8조)

- 1)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임)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임(해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임(해임) 신고 내역을 기록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 경력신고서·경력변경신고서 서식 및 증빙서류의 종류,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및 발급대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규정

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 시 신고 절차 및 실적승계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4조 신설)

- 1) 성능점검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점검업 양수인은 양도인의 성능점검업 영위기간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2) 신고서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의 종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록대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규정

라. 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절차 규정(안 제15조 신설)

○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성능점검능력 평가방법 및 실적승계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6조 신설)

○ 성능점검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 시의 평가기준 및 점검실적 합산에 관한 규정 마련

바. 성능점검능력 평가결과 공시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7조 신설)

1) 평가결과 공시 항목, 공시 기간 및 방법, 평가결과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규정

2) 관리주체 등은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때 공시된 성능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수수료 및 유지관리교육의 교육비 규정(안 제18조, 별표3 신설)

○ 유지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업무 및 성능점검업 등록·신고에 대한 수수료와 유지관리 신규·보수교육의 교육비를 규정하고, 성능점검능력 평가 수수료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 산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근로계약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④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리주체의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주소)를 말한다.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선임신고를 한 자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의5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의

6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9호의7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 사본
3. 신청일 전 90일 이내에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4.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가로 2.5센티미터 × 세로 3센티미터) 2장

② 법 제19조제8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의9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⑤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⑥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9호의11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국민연금 등”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및”으로, “회사근무 증명서

류”를 “기술인력의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 신고 등)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지위승계자”라 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피상속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상속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양수인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

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나.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대행에 관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합병공고문

라.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마.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상속인이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서류를 첨부

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5.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위승계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위승계자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

를 확인해야 하며,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1. 개인이 영위하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양도하는 경우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양도하는 경우
3.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제15조(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이하 “성능점검능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매년 2월 15일(제2호 각 목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영 제20조의2에 따라 성능점검능력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계설비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22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나.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용역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신청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제24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3.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다)

제16조(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은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성능점검능력은 제1항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 다만,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양도가 제1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 제1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성능점검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성능점검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성능점검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성능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실적에 합산한다.

⑤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

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새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또는 제575조에 따라 복권된 자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취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된 자

⑥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공시해야 하며,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수첩에 성능점검능력을 기재해야 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번호
5. 성능점검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성능점검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6. 보유기술인력

②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새로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③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 또는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성능점검능력평가 결과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수수료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수료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건축주)	성명(기관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공사 현장 명칭				
공사 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			
착공 예정일	준공예정일			
기계설비 설계자	상호	기계설비 설계 관련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영업소 소재지			
	도급 계약일			
기계설비 시공자	상호	공사업 등록 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영업소 소재지	현장 배치 기계설비기술인		
	도급 계약일			
기계설비 감리업무 수행자	상호	기계설비 감리 관련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영업소 소재지	현장배치 기계설비감리인		
	도급 계약일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	--

작성방법

기계설비 시공자는 그 시공자 모두를 적으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건축주)	성명(기관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기계설비 시공자	상호	공사업 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현장 배치 기계설비기술인		
기계설비 감리업무 수행자	상호	기계설비 감리 관련 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현장 배치 기계설비감리인		
건축허가 번호		검사 현장 명칭		
		검사 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수)	제곱미터/지하__층, 지상__층
착공일	. . .	완공일	. . .
검사 희망 연월일	. . .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3.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금액
------	--	--------------------------------

작 성 방 법

1. 연면적은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기계설비 시공자는 그 시공자 모두를 적으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11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1호 중 “교육과정: 최초교육”을 “교육 과정: 신규교육”으로, “주 소”를 “수 료 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최초교육 보수교육”을 “일련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책임자/담당자”를 “(책임/보조)”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담당자”를 “(신규/보수)”로 하고, 같은 서식 중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를 “교육과정”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서식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성명(대표자):”를 “등록일:”로 한다.

2. 성명(대표자):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등록 연월일”을 “등록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상호”를 “상호 또는 법인 명칭”으로 하며, 같은 앞쪽 중 “종목 및 등급”을 “등 급”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등록번호”를 “수첩발급번호”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기록”을 “기록자”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7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 평가방법(제16조제1항 관련)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 평가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상대적인 성능점검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성능점검능력평가액} = \text{점검실적평가액} + \text{경영평가액} + \text{기술능력평가액} \pm \text{신인도 평가액}$$

가. 위의 산식 중 점검실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1) 최근 3년간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의 평균액으로 하되, 성능점검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점검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성능점검업 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점검실적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성능점검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경영평가액} = \text{자본금} \times \text{경영평점}$$

- 1) 위의 산식 중 자본금은 제15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자본금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다만 평가연도 직전연도에 성능점검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자본금이 성능점검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 2) 위의 산식 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text{경영평점} = (\text{유동비율평점} + \text{자기자본비율평점} + \text{매출액순이익률평점} + \text{총자본회전율평점}) \div 4$$

가) 위의 산식 중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15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 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업체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나)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3) 실적평가액이 영 별표7의 규정에 의한 성능점검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성능점검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점검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성능점검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점검실적평가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성능점검업계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당 평균생산액)} \times \text{성능점검업자가 보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별 가중치를 반영한 수)} \times 30/100$$

1)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을 말한다]의 3배와 점검실적평가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 중 전년도 성능점검업계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당 평균생산액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한 업체의 총점검실적액을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한 업체가 보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별 가중치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보유기술인력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가중치	1.7	1.5	1.3	1	0.7

라. 위의 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5)까지의 요소별 신인도반영비율의 합계는 $\pm 30/100$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text{신인도평가액} = \text{점검실적평가액} \times \text{요소별 신인도반영비율의 합계}$$

1) 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업 영위기간에 따라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비율을

더한다.

영위기간	1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30년이상
비율	1/100	3/100	5/100	7/100

- 2) 평가연도의 직전연도에 이 법에 따른 과태료처분 이상을 받은 자는 100분의 1을 뺀다.
 - 3) 평가연도의 직전연도에 이 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이상을 받은 자는 100분의 3을 뺀다.
 - 4)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성능점검업자는 100분의 5를 뺀다.
 - 5)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성능점검능력평가 시 100분의 30을 뺀다.
2. 법 제21조에 따라 새로이 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한 성능점검업자와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성능점검업을 양수한 성능점검업자의 해당 연도 성능점검능력 및 다음 연도 성능점검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 나목2)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 한다.
3. 그 밖에 성능점검능력 평가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수수료 및 교육비(제18조 관련)

납부자	납부 금액
1.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자	없 음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5천 원
3. 유지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가. 신규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15만5천 원
나.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15만5천 원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4만원
5.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없 음
6.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상속,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 려는 자	2만원

비고

수수료 및 교육비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된 금액의 전부
2. 교육 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3. 교육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4. 교육 실시일 2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5. 교육 실시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교육비의 100분의 50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 또는 단체 명칭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교육훈련	소재지			
	내용			

「기계설비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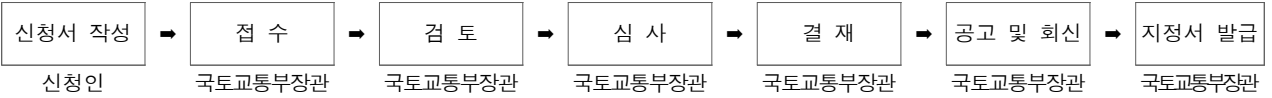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교육훈련 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2.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훈련 평가계획서 3. 교육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기계설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활용계획서 4. 교육훈련 운영규정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건축물등	건축물	연면적()	용도()		
	공동주택	세대수()			
	기타 건축물등	연면적()	용도()		
	주소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 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급	선임일	수첩발급번호	
	해 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급	해임일	수첩발급번호	
보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 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급	선임일	수첩발급번호	
	해 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급	해임일	수첩발급번호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근로계약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신고인(관리주체)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2. 대상 건축물등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를 적습니다.
3. 기타 건축물등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건축물등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확인	➔	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구청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구청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구청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건축물등	건축물	연면적()	용도()		
	공동주택	세대수()			
	기타 건축물등	연면적()	용도()		
	주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임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고인(관리주체)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2. 대상 건축물등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를 적습니다.
3. 기타 건축물등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건축물등을 말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건축물등	건축물	연면적()	용도()
	공동주택	세대수()	
	기타 건축물등	연면적()	용도()
	주소		
신청사유		신청부수	

「기계설비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수수료 : 5천원
------	---	-----------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인)	(서명 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번호

신고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건축물등	건축물	연면적()		용도()	
	공동주택	세대수()			
	기타 건축물등	연면적()		용도()	
	주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책임/보조	등급	선임일

「기계설비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책임·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직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대장

일련 번호	신고일	관리주체				대상 건축물등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호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축물 고유번호	건축물/공동 주택/기타	연면적/ 세대수	용도	선임/해임	선임일/ 해임일	책임/ 보조	등급	성명	수첩발급번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증명사진 (2.5cm×3cm)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현근무처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기계설비관련	종목	등급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기술자격사항					
기계설비관련	학과(전공)		학위	졸업연월일	학교명
최종학력사항					

기 술 경 력 사 항

연번	근무기간(연월일)	근무처명	사업자등록번호	직 위	담당업무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기계설비법」 제1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 3. 졸업증명서 원본(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4. 증명사진(2.5cm×3cm) 2매
담당자 확인사항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

신고인 동의서	동의 내용	동의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 및 학력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 및 고등교육법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학교, 국가기술자격검정기관 - 이용 목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및 학력, 자격조회 - 제공 항목: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경력, 학력, 자격 - 제공기관 보유·이용 기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인정(심사완료)시까지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동의서	동의 내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목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 업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2. 기계설비 관련 기술자격사항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기술자격 중 신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기술자격을 모두 적습니다.
3. 기계설비 관련 최종학력사항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학위 및 기계설비 관련 교육과정 또는 학과의 이수·졸업 사항을 적습니다.
4. 기술경력사항란 중 담당업무는 기계설비 관련 업무(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성능점검)를 적습니다.
5. 첨부서류 중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수첩발급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현근무처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사항	기술 자격	종목	등급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최종 학력	학과(전공)		학위	졸업연월일	학교명	
	기술 경력	근무기간(연월일)		근무처명	사업자등록번호	직 위	담당업무
		~					
		~					
		~					

「기계설비법」 제1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 3. 졸업증명서 원본(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동의서	동의 내용	동의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 및 학력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 및 고 등교육법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학교, 국가기술자격검정기관 - 이용 목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및 학력, 자격조회 - 제공 항목: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경력, 학력, 자격 - 제공기관 보유·이용 기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인정(심사완료)시까지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동의서	동의 내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목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 업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2. 기계설비 관련 기술자격사항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기술자격 중 신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기술자격을 모두 적습니다.
3. 기계설비 관련 최종학력사항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학위 및 기계설비 관련 교육과정 또는 학과의 이수·졸업 사항을 적습니다.
4. 기술경력사항란 중 담당업무는 기계설비 관련 업무(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성능점검)를 적습니다.
5. 첨부서류 중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지 앞쪽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기관 마크

발급기관명

130mm×80mm[백상지(150g/㎡)]

표지 뒤쪽

130mm×80mm[백상지(150g/㎡)]

(1 쪽)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 급 번 호 : _____
 등 급 : _____
 성 명 : _____
 생 년 월 일 : _____
 주 소 : _____
 발 급 일 : _____

사진

(가로 2.5cm×세로 3cm)

위 사람은 「기계설비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임을 확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합니다.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직인

130mm×80mm[백상지(150g/㎡)]

(2 쪽)

기술자격

종 목 및 등 급	등 록 번 호	합 격 연 월 일	발 급 기 관

130mm×80mm[백상지(150g/㎡)]

(3 쪽)

학 력

학과(전공)	학위	졸업연월일	학교명

130mm×80mm[백상지(150g/㎡)]

(4 쪽)

기술경력

근 무 처 명	담 당 업 무	환 산 경 력	경 력 누 계

130mm×80mm[백상지(150g/㎡)]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발급번호

수첩 발급번호		등급구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술 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최종 학력	학과(전공)	학위	졸업연월일		학교명
기술 경력	근무기간(연월일)	근무처명	담당업무	환산경력	경력누계
	~				
	~				
	~				
	~				
	~				

「기계설비법」 제1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2제5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직인

기술경력

연번	근무기간(연월일)	근무처명	담당업무	환산경력	경력누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illegible]

유지관리교육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소속 회사	선임 현장 소재지 선임일	
신청내용	교육 과정 [] 신규교육 [] 보수교육		
	선임 구분 []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지관리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교육비: 15만5천원
------	----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등록 변경등록	25일 5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등록번호(변경등록 시)				

※ 해당 사항만 작성합니다.

신규 등록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필요시)			
	자본금	원, 자산평가액	원	
	기술인력	명	장비	따로 붙임

변경등록 신고사항

[] 상호 변경 [] 영업소 소재지 변경 [] 기술인력 변경 [] 대표자 변경

변경일

변경내용	구 분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영업소 소재지	기술인력	대표자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 해당 사항만 작성합니다.

「기계설비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4만원(신규등록)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출 구분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첨부 서류	등록 [제출서류(제3호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는 등록신청 전 30 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1.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 서류 2.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시행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합 니다)
	변경등록	1.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나.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 능인력 보유증명서와 그 첨부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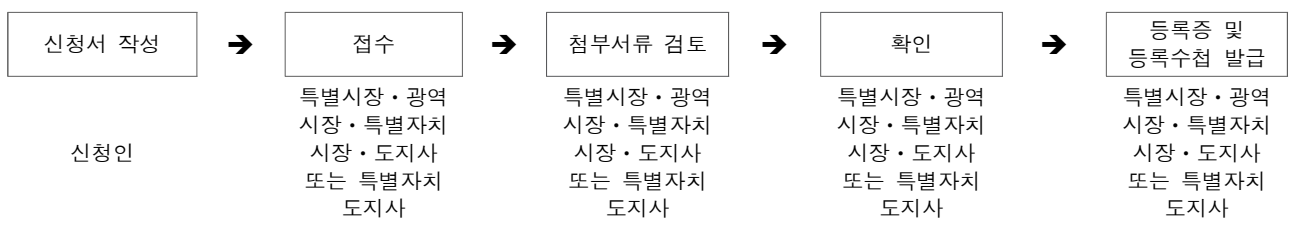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 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 표 자			
일련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수첩발급번호	입사일	등급	비고

위와 같이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

210mm×297mm[백상지(80g/㎡)]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130mm×80mm[백상지(150g/㎡)]

(제1쪽)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 표 자	
등 록 번 호	제 호	등 록 일	
영업소 소재지			
위와 같이 등록되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130mm×80mm[백상지(150g/㎡)]

(제2쪽)

변 경 사 항			
변 경 연 월 일	변 경 구 분	변 경 내 용	확 인
비 고			

130mm×80mm[백상지(150g/㎡)]

(제3쪽)

성 능 점 검 능 력 평 가 액			
연 도	금 액 (천원)	기 록 일	기 록 자 (서명 또는 인)

130mm×80mm[백상지(150g/㎡)]

[illegible]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등록번호		등록일	
	재발급 신청 종류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사유			

「기계설비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	---------------------------------------

처 리 절 차

신 청 서	➔	접 수	➔	심 사	➔	결 재	➔	등록증 재발급
-------	---	-----	---	-----	---	-----	---	---------

신청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담당 부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 휴업 [] 폐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등록번호	등록일	
	연월일 년 월 일		
	신고 사유		

「기계설비법」 제21조제5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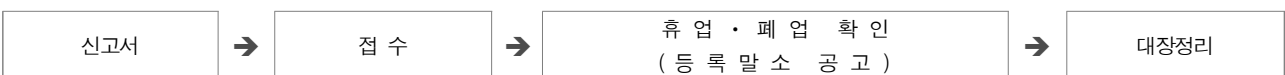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고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담당부서)

신 고 인 제출서류	- 상속인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피상속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상속인에 관한 서류로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양수인의 경우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관리주체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대행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 합병계약서 사본 -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합병공고문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서류로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수수료 : 2만원
담당 공무원 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인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승계일은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양수인의 경우 영업 양도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합병일을 말합니다.
- 승계인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피승계인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법인을 말하며 합병되는 법인을 모두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신고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기계설비성능점검 실적증명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기계설비성능점검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점검명

현장 소재지(번지까지 기재)

계약 연월일	점검 시작일	점검 종료일
총 계약금액	해당연도 계약액	해당연도 기성액
계약방법	도급종류	
하도급 업체명	하도급 금액	

위와 같이 기계설비성능점검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대표자)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년 월 일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발주자

- 상호(명칭)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 소
- 전화번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기계설비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 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u>포함한다. 이하 같다</u>)를 첨부해 야 한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 ----- ----- ----- ----- <u>포함한다</u> -----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① 영 제1 2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4 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 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u>서류</u> 를 첨부해야 한다. 1.·2. (생 략) ②·③ (생 략)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① ----- ----- ----- ----- <u>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u> ---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① 영 제1 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① ----- ----- -----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
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해야 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
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
다)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
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
표와 같다.

② (생 략)

<신 설>

----- 서류(전자문
서를 포함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
임신고 등) ① -----

----- 별
표 1과---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3항
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기
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
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
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근로계

<신 설>

<신 설>

<신 설>

약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④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리주체의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주소)를 말한다.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신 설>

<신 설>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선임신고를 한 자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의5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의6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신 설>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 ① 기계설비유지
관리자는 법 제19조제8항에 따
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9호의7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전자문
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5
조제4항에 따른 관련 업무를 위
탁받은 자(이하 “경력관리 수탁
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 사본
 3. 신청일 전 90일 이내에 발급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4.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
한 증명사진(가로 2.5센티미터
× 세로 3센티미터) 2장
- ② 법 제19조제8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의9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⑤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근무처 및 경력등에

제10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관한 증명서를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⑥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9호의11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① ----- ----- ----- ----- ----- ----- ----- -----
---	--

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략)

2. 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자격 취득 증명서류 사본

나. 국민연금 등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등 회사근무 증명서류 사본

3. (생략)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

1. (현행과 같음)

2.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증명서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및 ----- 기술인력의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

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증의 발급 및 반납 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12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

-----.

제1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증의 발급 및 반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12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

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④ (생략)

<신설>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
승계 신고 등) ① 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
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지위승계자”라 한다)는 별
지 제20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
점검업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
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
류

나. 피상속인의 기계설비성능
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

첨

다. 상속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양수인의 경우(분할 또

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

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목

의 서류

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

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

한다)

나.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

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라.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

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7

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대행에

관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
류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
록수첩

다. 합병공고문

라.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마.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
되는 법인에 관한 서류로
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를 신
고하려는 상속인이 법 제21조제
5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라
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5.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 지위승계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설비성
능점검업 등록증 및 별지 제16
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별
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
점검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
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위승계
자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
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
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계설비성
능점검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기
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한 자산
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
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기계설비성
능점검업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신 설>

1. 개인이 영위하던 기계설비성
능점검업을 법인사업으로 전
환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
능점검업을 양도하는 경우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법
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
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양도하는 경우
 3.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회
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거
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제15조(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이하 “성능점검능력평가”라 한
다)를 받으려는 기계설비성능점
검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
다)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계
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매년 2월 15일(제2호 각 목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영 제20조의2에 따라 성능점검능력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계설비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 22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나.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용역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신청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를」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인 경
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
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
다.

가. 「법인세법」 및 「소득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세무사법」 제6조에 따
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
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
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
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
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제24에 따른 회계법
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
무제표

3.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제10조제1항제2호

<신 설>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다)

제16조(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
점검능력은 별표 2에 따라 평가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양도
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성능
점검능력은 제1항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 다만, 기계설비성능
점검업의 양도가 제1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 제1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
된 법인의 성능점검능력은 피상
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성능점검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기계설비성능
점검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성능
점검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

가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성능점검 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실적에 합산한다.

⑤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새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또는 제575조에 따라 복권된 자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취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

<신 설>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된
자

⑥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
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해
야 하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
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성능점검능
력평가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
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공시해야 하며, 해당 기
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수
첩에 성능점검능력을 기재해야
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번
호

5. 성능점검능력평가액과 그 산
정항목이 되는 성능점검실적
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

<신 설>

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6. 보유기술인력

②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새로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③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 또는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성능점검능력평가 결과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수수료 등) ① 법 제25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수수료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부칙	부칙
제2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별표는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거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1. (생략)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u>제14조제1항제3호에</u>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7일	제2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u>영 제14조제1항제3호에</u> ----- -----